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69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김민전 · 권성동 · 고동진
최수진 · 서천호 · 조배숙
나경원 · 장동혁 · 이소희
조경태 · 김 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역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평가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 늦은 시간에 개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및”을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다만,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 횟수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생략)</p> <p>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1. <u>시·도지사선거</u>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p> <p>2. (생략)</p> <p>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p>	<p>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u>시·도지사선거</u>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다만, <u>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③ ----- ----- -----<u>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u>----- ----- -----.</p>

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
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
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④ ~ ⑭ (생략)

-----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방송토론 대상 후보
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
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
회의 개최 횟수를 1회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④ ~ ⑭ (현행과 같음)